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41

발의연월일: 2021. 3. 19.

발 의 자:이병훈·강병원·김상희

김승원 · 김철민 · 노웅래

민병덕 · 민형배 · 박 정

서영교 · 오영환 · 유정주

윤영덕 • 이수진 • 이용빈

이형석 · 임오경 의원

(179]

제안이유

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 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음.

이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는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저해고 있음.

이에 법 개정을 통하여,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,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준공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주택지구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를 신설함(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- 나.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거래 중 제9조제2항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거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함(안 제57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결과의 내용이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.
- 1.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이후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서를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
- 2. 조성한 주택지구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 있는 필지 및 그 필지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거래 내역. 이 경우 준공검사 완료 전 10년 이내의 거래 내역으로 한정한다.

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

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	제9조(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
방지대책) ① ~ ③ (생 략)	방지대책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<u> <신 설></u>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
	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
	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
	내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
	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
	통부장관은 조사결과의 내용이
	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
	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
	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
	내역의 조사는 다음 각 호를
	기준으로 실시한다.
	1.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
	이후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
	<u>공검사서를 관보에 공고한</u>
	<u>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</u>
	<u>할 것</u>
	2. 조성한 주택지구 경계로부터
	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
	있는 필지 및 그 필지의 경

제57조(벌칙) ①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략)

계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거래 내역. 이 경우 준공검사 완료 전 10년 이내의거래 내역으로 한정한다.

제5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정한 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